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8. .
국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29일, 김영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2026. 8.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의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2026. 8.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진의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수정의결

6. 심사결과

수정의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8.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2026. 10. 2.) 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맞추어 특례를 신설함(안 부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 ----- ----- ----- ----- ----- ----- ----- -----.	② ----- ----- ----- ----- ----- ----- -----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1. ----- ----- ----- ----- ----- ----- ----- ----- -----	1.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 장, 경찰청장, <u>합 동참모의장</u> , 한국 은행 총재, 특별 감찰관, 한국방송 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 의위원회 위원장 의 후보자	----- ----- ----- ----- <u>검찰총장,</u> <u>경찰청장, 중대범</u> <u>죄수사청장, 합동</u> <u>참모의장</u> ----- ----- ----- ----- ----- ----- ----- ----- -----	----- ----- ----- ----- <u>검찰총</u> <u>장, 중대범죄수사</u> <u>청장, 경찰청장,</u> ----- ----- ----- ----- -----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 음)	2.·3. (개정안과 같 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u>이 법은 2026년 10</u> <u>월 2일부터 시행한</u> <u>다.</u>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2026년 10월 2</u> <u>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인사청문회에</u> <u>관한 특례) 「법률</u> <u>제21490호 공소청</u> <u>법」 부칙 제4조</u>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 ----- -----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u>검찰총장</u>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1. ----- ----- ----- ----- ----- ----- ----- ----- ----- <u>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u>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